

日本の「大韓民國과日本國간의漁業에 관한協定」의 일방적 破棄에 관한 決議案

議案 番號	936
----------	-----

提案年月日：1998. 1. .

提 案 者：農林海洋水産委員長

主 文

우리는 1998. 1. 23 일본정부가 한·일양국이 30여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온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1996년 한·일 양국이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시작한 그간의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임은 물론 전통적인 한·일 양국간 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정부가 국제연합해양법협약 정신에 따라 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전통적인 어업질서를 존중하여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일어업협정 개정에서 성실히 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하여 일본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또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일본측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

1. 일본정부는 양국의 선린우호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통적 조업 관행을 존중하여 양국 어민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어업협정 개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불법적으로 나포한 우리 선장과 어선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본정부의 협정과기에 즈음하여 조업자율규제에관한합의의 파기는 물론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提案理由

1998년 1월 23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향후 국민감정 악화로 양국의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일본정부의 비신사적인 일방적 파기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임.